

2018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안내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18년도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1) 재인증 : 2013년도에 인증 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또는 현재 정지 상태인 기관

2. 접수안내

- 1) 기간 : 2018년 9월 14일(금) 10:00 ~ 10월 19일(금) 17:00
 - (1) 상반기 : 매년 1월 셋째 주 ~ 2월 셋째 주
 - (2) 하반기 : 매년 9월 셋째 주 ~ 10월 셋째 주
- 2) 방법 : 온라인 접수(지원서 및 해당서류 파일첨부 후 심사비 결제)
 - 재인증 : 본 학회 홈페이지 > 전문상담사 >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 > 2018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신청 안내 클릭

※ 반드시 심사비 납부하셔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신청조건

- 1)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한 후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기관의 대표자
 - (1) 대표자는 (사)한국상담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든 일반 수련감독자이든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 (2) 상담 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대표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수련감독자이외의 사람이 기관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3) 대표자 명의의 또는 임대 계약이 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 조거에서는 제외됩니다.
- 3) 수련감독자
 - (1) 교육연수기관에는 수련감독자 2인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개인)기관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수련감독자가 아니면 대표자를 제외한 수련감독자 2인이 있어야 합니다.
 - (2)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교육연수기관 3곳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단, 공공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 4) 기타
 - (1) 교육연수기관 시설
 - 사무실 외의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과 같은 2개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

1) 일반기관의 경우 (각 1부)

- ① 지원서 작성(온라인 접수 시 작성)
- 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 ③ 기관 소재지 등기부 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 ④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 ⑤ 대표자의 본 학회 수련감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 ⑥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자격증 사본
- ⑦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 ⑧ 정관
- ⑨ 조직표
- ⑩ 장단기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 ⑤, ⑥, ⑦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 하여 입력하면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자격증 사본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의 경우 (각 1부)

- ① 지원서 작성(온라인 접수 시 작성)
- 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 ③ 대표자의 박사학위 증명서
- ④ 대표자가 관련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 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 ⑤ 수련감독자 2인의 본 학회 자격증 사본
- ⑥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 ⑦ 정관
- ⑧ 조직표
- ⑨ 장단기 사업계획서
- ⑩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실제길이를 cm로 표시)
- ⑪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첨부2. 분과지역학회장 추천서 참고)

※ 첨부서류 ⑤, ⑥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 하여 입력하면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자격증 사본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1) 결과발표

- (1) 일시 : 2018년 11월 1일 오전 10시
- (2) 확인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 - 전문상담사(상단 메뉴) - 교육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에서 심사결과 확인

2) 인증서

- (1) 발급 : 본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아웃 옆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하면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가능

(2) 유효기간 :

① 2018년 11월 01일 ~ 2019년 2월 28일

② 인증서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매년 3월 1일자로 새로 발급됨.

교육연수기관 인증 기간은 5년이지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므로 매년 연회비 납부하면 3월 1일자로 인증서가 발급됨

3) 재인증 :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5년이 지나면 재인증 필수

4)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1) 대표자가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

(2) 재인증 실패

(3) 연회비 미납

6. 유의사항

1) 연회비 납부

(1) 기간 : 가입 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발급 불가)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 클릭 > 납부

2)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 기관 대표자, 수련감독자, 기타 정보

변경 내용	제출 서류	
	공공기관	일반기관
주소변경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대표자 변경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1부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 관련 공문	명칭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 기관 대표 및 강사의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연수교육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보호 차원에서 교육연수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문의 02-875-5830(내선번호 2번) / 홈페이지-커뮤니티-Q&A 기관회원 관련 문의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